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7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고민정 · 서미화 · 박홍배
최혁진 · 박선원 · 윤종오
오세희 · 박성준 · 박정현
신장식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가 인권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음에도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논란이 됨.

또 인권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지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어떤 최소한의 의무 준수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징계 조항을 신설해, 위원들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동법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함(안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나.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을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위원장 및 위원이 제11조의2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받게 될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을 “제3호 및 제4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 태만·품위손상행위 등 이 법의 목적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징계의 종류) 제11조의2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 ---. -----제3호 및 제4호의-- ----- ----- -----.
<신 설>	1.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
<신 설>	2. <u>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 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 무방해를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u>
<신 설>	3. <u>제10조에 따른 검직금지를 위반한 경우</u>
<신 설>	4.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 능한 경우</u>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 장과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신 설>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 태만 · 품위손상행위 등
이 법의 목적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
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
계한다.

제11조의3(징계의 종류) 제11조의
2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
는 보수는 2분의 1을 감액한
다.